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명백한 불법정보 긴급차단권 도입〉

■ 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75호)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불법정보 유형 추가	3
2. 명백한 불법정보 긴급차단권 도입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현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2. 27.

다. 회 부 일 : 2026. 3.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은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및 인공지능 활용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음.

그러나 관계기관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심의요청 건수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성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 조치를 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및 인공지능 활용 거짓·과장 광고는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로서 불법성의 요건이 비교적 단순하고, 관계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모니터링 인력이 불법성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

채증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통해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불법성 판단을 하여 대체로 시정요구 의결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및 인공지능 활용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이른바 “심각한 법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요청함으로써 현행 심의체계 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불법정보 유통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7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불법정보 유형 추가(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부터 제6호의9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는 불법정보의 유형에 대부업에 관하여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거짓·과장의 광고 등을 추가함(안 제44조의7제6호의5부터 제6호의9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의4. (생략) <u><신설></u>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6의4. (현행과 같음) <u>6의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에 관하여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u>

현행	개정안
	6의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광고 6의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 정보 6의9.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

현행	개정안
7. ~ 9. (생략) ② (생략)	<u>트의 정보</u> 7.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유형의 정보들은 불법정보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이 금지되고¹⁾, 일부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의 심의를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고²⁾, 일부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미심위의 7일 이내의 신속심의³⁾를 거쳐 시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 이러한 불법정보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들이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심의요청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미심위가 불법성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시정요구 조치를 하는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심의 병목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⁴⁾.

○ 개정안은 불법정보유형을 추가하고, 심각한 법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방미심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4) 방미심위 심의건수 및 처리기간(23년~25년 3년 간 자료, 본문 p.11 참조)

정요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심의체계 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불법정보 유통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자율조치 유도로 사회적 해악성이 명확하고 보호의 가치가 없는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방미심위 심의 물량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불법정보 유형 추가의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불법정보 제도는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모두 동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임.
- 특히, 현행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는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서 신설하려고 하는 각호의 정보들 모두 제9호에 포섭되므로, 불법정보의 유형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는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안 제7항에서 긴급 차단 대상이 되는 항목을 불법정보 유형에 추가했다는 점, 비록 현행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정보 전부를 포섭하고 있으나, 각호에 명

시된 불법정보 유형에 대하여 국민이 인식하도록 하는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정보 유형에 추가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보임.

2. 명백한 불법정보 긴급차단권 도입(안 제44조의7제7항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불법정보 유형 중 일부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방미통위가 방미심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거부·정지·제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7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	③ ----- -----제6호의2부터 제6호의

현행	개정안
호부터 제6호까지, <u>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u>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④ ~ ⑥ (생략)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설></u>	9----- -----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⑦ <u>제1항제6호, 제6호의4부터 제6호의9까지의 정보 중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방송미디어</u>

현행	개정안
	<u>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의 요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u>

다. 검토사항

- 인터넷 규제 체계는 행정권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민간기구인 방미심위가 불법정보를 비롯한 정보통신에서의 내용 관련 심의를 담당하고,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등 각종 처분은 행정기구인 방미통위가 담당하는 이원적인 형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미통위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음.
- 심의와 관련하여, 온라인 유통 불법정보에 대한 방미심위 통신심의 시정요구 결정 비율은 3년 연속 분야별로 100%에 근접했고, 처리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명백한 불법정보 신속 차단을 위한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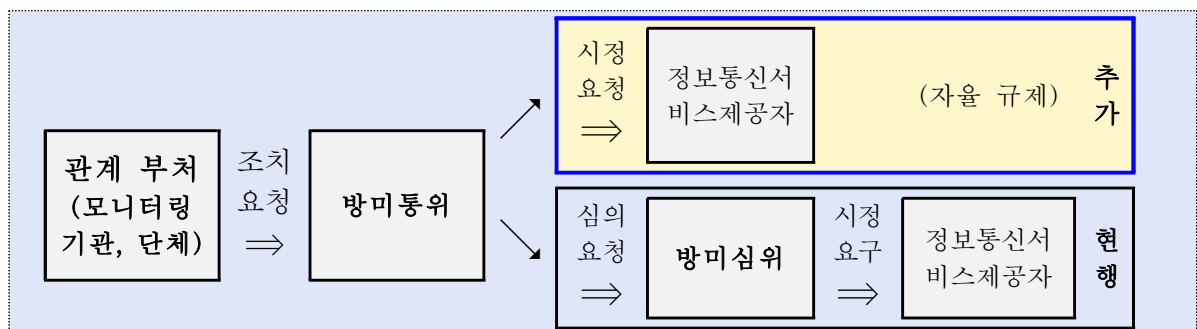
<방미심위 심의건수 및 처리기간>

구분		마약	도박	저작권침해	불법금융	자살유발정보
2023	전체심의건수	30,503	55,623	7,176	7,353	477
	처리기간	49일	88일	11일	29일	56일
	시정요구 결정 비율	100%	99.98%	100%	100%	97.69%
2024	전체심의건수	31,439	85,516	6,592	10,637	486
	처리기간	57일	149일	11일	79일	99일
	시정요구 결정 비율	99.98%	99.98%	100%	99.94%	91.77%
2025	전체심의건수	18,208	53,569	2,719	6,082	216
	처리기간	24일	89일	24일	89일	38일
	시정요구 결정 비율	99.98%	99.98%	100%	100%	99.54%

자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개정안은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긴급차단권을 도입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방미통위가 일단 사업자에게 해당 불법정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방미심위에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 규제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실상 100% 가까이 시정요구 결정이 나오는 심의의 부담을 덜며, 불법성 및 국민에 대한 피해 여부가 명확한 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게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함.

<개정안에 따른 절차 개선 흐름도>



자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에 따른 방미통위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직접 요청이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안 제7항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방미심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만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미통위의 요청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정보 처리의 거부·정지·제한 조치를 한다면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이 신속히 이루어질 뿐 아니라, 방미심위의 심의 건수가 감소하여 방미심위는 보다 인력과 예산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이 있음.
- 둘째, 부처별 시정요구·명령권이 도입되고 있는 입법동향을 고려할 때, 타법상의 규제 체계와의 중복 우려가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방미심위의 심의 지연에 따른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최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5)6), 「저작권법」7)8)개정을 통하여 관계 부처의 장이 직접 정보

5) 2025. 11. 11.개정, 2026. 11. 12.시행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2.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삭제 요청
3.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한 긴급구조 신고 또는 유통자에 대한 신고 등 사후관리
4.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음.

- 마약 관련 정보, 병역면탈 정보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차단 요청 권한을 도입하는 법안이 지속 발의되고 있음.

○ 특히, 자살예방법 및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서 방미통위의 긴급차단을 도입할 경우, 특히 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8의 자살유발정보나 제6호의9의 저작권법 위반 정보에 대해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음.

○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불법사금융, 자살유발정보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관련 기관이 모니터링하여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신속하게 해당 유형의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해당 부처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 2026. 2. 10.개정, 2026. 5. 11.시행

8) 「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개별 부처 차원의 불법정보 규제를 강화하는 최근의 입법동향의 긍정적 측면으로 보임.

- 다만, 부처별 시정요구·명령권의 도입이 개별법의 지속적인 개정을 수반하여 불법정보 규제 체계가 분산된다는 점, 행정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기구로서 방미심위를 설치한 방미통위법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점, 규제 대상인 사업자들 입장에서 일원화된 창구로서 방미통위가 아니라 분야별로 각기 다른 부처의 조치 요청 및 명령에 직면하게 되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은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의 신속성 및 해당 부처의 전문성 활용과 방미통위 중심 일원화된 규제 체계 사이의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방미통위는 2025년 저작권 불법유통 사이트 신속 차단 관련 부처간 협력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주재 하의 부처간 조정을 통해, 문체부의 저작권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신속 차단 조치를 실행하되, 추후 방미통위 소관법 개정 완료·시행되면 방미심위에 의한 신속차단제도로 전환하고 문체부 저작권법 관련 조항은 삭제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행정권한의 소재가 입법의 선행요건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저작권법에 도입된 신속차단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안 제44조의7제7항은 방미통위가 방미심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불법정보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므로, 개정된 저작권법상 제도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제도는 상이함.

- 셋째, 방미통위에 의한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긴급차단권 도입 이외에 효과적인 다른 수단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입법적 수단으로는 명백한 불법정보에 한하여 방미심위의 심의절차를 극단적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고, 정책적으로는 최근 개정된⁹⁾ 방미통위법에 따른 서면심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⁰⁾.

9) 2026. 2. 19. 개정

1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회의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3.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4. 국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따라서 방미심위의 심의절차를 간소화하하거나 서면 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처분권한을 행사하는 방미통위와 심의·의결 기구인 방미심위의 이원적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신속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별 정부 기관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조치 요청하는 입법 추세와 관련하여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절차와 방식의 불일치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혼란을 가중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방미통위로 창구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고, 방미통위는 동시에 방미심위에 심의 신청함으로써 정부의 요청이 자율규제 요청임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온라인상의 정보에 대한 방미심위의 심의와 방미통위의 제재 이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 체계로서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분야의 온라인 불법정보 유통 방지는 현행 저작권법에 따른 문체부장관의 시정명령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바, 개정 시 문체부의 전문적 판단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 결과에 종속되거나 부정될 수 있는 등 저작권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제6호의9를 삭제할 필요가 있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비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다는 의견을 제출함.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기구인 방미심위에서 내용심의
를 담당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행정권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자 한 방미통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사실상 국가(정부)에
의한 검열 논란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서면심의 및 빅테크 기업
과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
견을 제출함.
- 인터넷기업협회는 일부 불법정보는 이미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
기관의 판단을 기초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치요청을 하
는 규정이 존재하여 중복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불법정보의 규제체계를 방미통위로 일
원화하려는 입법취지에 동의하나, 행정기관이 온라인에서 유통되
는 불법정보의 차단 여부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균형과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고, 불법정보 규제 관련 최근 입법
동향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28